

儒教喪服의 조직원리에 대한 연구

趙 又 玄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Organization Principles of Mourning Dresses in Confucianism

Cho Woo Hyun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1994. 7. 6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 organization principles of mourning dresses in Confucianism. The results of this thesis summarised as follow:

The organization of mourning dresses laying stress on LiGi, the book of rites has six kinds of contents, FuShu. It is established on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a religious sect in Confucianism, ZongFa. The succession ideology of ZongFaism has played on important parts in formation and conservation of the large family system by the medium of mourning dresses with 5 classified costumes, WuFu. And the family system in mourning dresses makes the rules in kindship category and primogeniture by WuFu grades.

I. 緒 論

喪禮는 사망에 대하여 애도를 표시하는 상중의례로서 제행위를 이르며 喪의 語意가 哀의 의미로서 죽은이(亡人)에 대하여 슬픔으로 통곡한다(哭)는 뜻에서도 상례 전 과정은 남은이들의 哀痛之情을 표현하는 의례 행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哀悼義禮 과정에서 착용되는 喪服은 상례제도 전체 내용의 부분에 해당되거나 儒敎의 예의 실천방법으로 볼 때, 臨終에서 吉祭에 이르는 거상기간 중 연속성을 갖는 상 행위로 실제로 미친 영향력은 타 상중 행위보다 持續的이고 表現的이라 볼 수 있다.

유교喪禮服은 麗末에 朱子家禮가 전래된 이후 조선

시대에는 왕에서 부터 사대부는 물론 서인에 이르기까지 지위와 신분을 초월하여 동일한 形制로 철저히 준수되어 왔다. 상례는 유교의 禮문화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조선조의 禮論 是非의 정치적 논쟁은, 西人과 南人의 상복제에 대한 시비이론을 시발로 玄宗년간에 趙大妃의 상복 착용문제에 관한 여러차례 禮訟이 있었으며 후에 四色黨爭의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또한 천주교 전래시에는 상제례 문제가 크게 갈등을 일으켜 마침내 流血참사에 이르게 되었다¹⁾.

이러한 상복제도에서 服이란 喪服, 居喪, 喪期の 3가지 의의를 나타내주고 있으나²⁾, 본고에서는 유가의

1) 趙又玄, 朝鮮時代 喪服에 관한 연구, 숙대 대학원 학위논문, 1990, p. 12

상복관념은 어떤 예론을 기초로 형성되었으며, 宗法制度를 기반으로한 가족 및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 이에 의거한 상복조직의 원리 또한 조직되어진 五服의 명칭, 마지막으로 친족관계의 경중, 친족의 범위를 결정하는 有服親의 범주 등에 대하여 禮記를 중심으로, 他禮書를 분석하여 유교사회에서의 상례복의 위치를 고찰하고, 나아가 상복의 제도가 個人 家族的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社會의 제도 및 國家 政治의 차원동 유교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儒家의 喪服概念

유가의 상례는 節制와 文飾의 두가지 효용을 겸비하고 있다. 文飾이 없다면 內心の 哀悼之情을 표현할 방법이 없고 감정의 표현방법이 지나치면 그로 인하여 신체를 훼손시키며 心性까지 멸할 것이고 죽음으로 인해 삶을 해칠 수도 있으니, 반드시 哀傷의 감정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절제하여야 함이 유가 상례의 근본이다. 지극히 잘 갖추어진 예는 감정과 형식을 모두 다하고 있으며, 그 다음의 예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고, 가장 下級의 예는 감정면으로 만 치우쳐 있으나 결국 옛날의 素朴함으로 귀결된다²⁾.

喪禮에 있어서 의식의 변화는 修飾을 가함으로써 보 기쁨을 줄이는 것이다. 감정과 모습의 변화는吉하고 凶한 것을 구별하고, 貴하고 賤한 신분과 親疎관계의 節度를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사악한 것이다. 禮라는 것은 너무 긴적은 자르고 짧은 것은 이어주며 남음이 있는 것은 덜어주며 부족함이 있는 것은 보태주고 사랑과 존경의 形式的인 수식을 다하며 의로움을 행하는 아름다움을 키워주어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禮는 때에 따라 가리어 바뀌가며 쓰는 것으로, 거친 喪服과 뜻하는 것과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은 험악한 사태를 지행하면서 凶한 일에 쓰는 것이다. 거친 喪服을 만들어 입음에 있어서도 몸에 해롭게 되지는 않게 되며 슬픔을 나타냄에 있

어서는 슬픔이 극에 달하여 건강이 상하도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禮의 알맞는 길이다⁴⁾. 즉, 내면의 哀情 표현 방법으로 中庸之道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즐거움으로 얼굴에 윤택이 나타나는 것과 조심과 슬픔으로 안색이 나쁜 것은,吉한 것, 凶한 것, 그리고 감정이 얼굴에 나타난 것이고, 보통 옷과 관, 黼무늬와 黻무늬 같은 물들인 무늬 및 붉은 베의 喪服과 喪服에 두르는 머리띠, 허리의 삼띠, 삼베로 짠 상옷과 띠풀로 짠 신은,吉한 것과 凶한 것 및 조심과 즐거움의 감정이 의복에 나타난 것이다⁵⁾. 이와같이 定性的인 인간의 섬세한 내면세계를 定量的인 精緻한 예의 실천 방법으로 특별히 상복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가상례는 삶을 厚待하면서 죽음은 薄待하는 것은 지각이 있는 것만을 공경하고 지각이 없는 것은 소홀히하는 것이므로 사리에 어긋나며 사악한 것이다. 즉 상례는 살아 있듯이 죽음을 섬기는 것이며 그의 生時를 본따서 죽음을 傳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도 같고 산것도 같으며 없는 것도 같고 있는 것도 같게하여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한결같이 하는 것이다⁶⁾. 결국 상례절차의 여러과정이 生時의 모습을, 상복의 구조가 타예복의 구조를 본딴것은 如生如死의 개념이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喪服과 宗法制度

儒家는 倫理道德을 중시하고 고유한 家族制度를 옹호한다. 도덕이란 본래부터 추상적인 관념을 세워 그러한 사상체계를 행동체계로 실시하고자 할때 반드시 사회내에 조직이 있어야 한다. 유가의 윤리도덕을 실행하는 사회는 사회의 질서수립을 위하여 가족사회의 宗法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宗法이란 父 사망시 長子, 嫡子가 그 가계를 계승하는 子孫繼承의 일개 법칙이다. 이 법은 원래 중국에서도 그 기원이 오랜 것으로 유가에 의해 창안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제도가 유가에 의하여 계승되어 발전되고 조직화된 것이다. 詩經 大雅편에 大宗維翰 宗子維城이나 左傳僖公五年에 軍其修扈 而固宗子 및 金文의 大宗 宗婦등의 어휘의 기록등으로 보아 종법제

2)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출판부, 1985, p. 554

3) 荀子約注, 禮論篇 1, p. 261

4) 荀子約注, 禮論篇 2, p.266

5) 荀子約注, 禮論篇 2, p.265

6) 荀子約注, 禮論篇 2, p.267

도는 이미 周代부터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계승에 대한 說은 別子が 祖가 되고, 別子를 계승하는 것이 宗이 되고 이를 계승하는 것이 小宗이다. 五世로써 宗을 옮기는 것이 있으니 그 高祖를 잇는 것이라 하였고⁷⁾ 別子를 祖로하여 別을 계승하는 것을 宗이라 하고 이를 계승하는 것을 小宗이라고 한다⁸⁾.

百代가 되어도 옮겨지지 않는 것은 別子の 子孫이며 五代가 되면 옮겨지는 것은 高祖를 繼承한 것이다.

이렇게 상세한 분열이 傳統的 宗法이며 孔子가 주장하는 假嫡에 적합한가는 감히 말할 수는 없으나 儒家의 宗法이 傳統社會의 組織을 형성시킨 것은 확실하다. 더 나아가 喪服의 制度는 斬衰·齊衰·大功·小功·總麻 등의 五等級의 制度로서 上·下·傍을 갖고 있는 親族關係로서 組織된 親族網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상복제도와 親族制度는 各各 必要充分 條件이 되어, 喪服制度를 통하여 宗法制度에 대한 通時性과 共時性을 考察할 수 있다.

3. 喪服의 組織原理

親族團體에 있어서 喪服은 六個 原則에 의해 정해진다.

첫째 親親이란 血緣의 親疎에 의한 것으로 復喪의 輕重의 基本이 되고, 둘째 尊尊은 身分의 高下에 따라서, 셋째 名分이란 直系親屬이 아니고 다만 名分상의 關係로, 넷째 出入은 宗族歸屬에 의한 出嫁한 女子의 喪服이며, 다섯째 長幼라 함은 年齡에 따라 喪服의 基準이 설정된 것이고, 여섯째 從服은 間接關係인의 服喪을 말한다⁹⁾.

1) 親親

血緣이 親疎遠近에 의해서 喪服의 輕重이 설정되는 것을 말한다.

大傳에 親을 親으로 섬김은 셋을 가지고 다섯을 만들고 다섯을 가지고 아홉을 만들며, 위를 줄이고 아래를 줄이며 옆을 줄여서 친함이 끝난다고 하였다. 喪服 四制에는 恩德이 敦厚한자는 服이 무거운고로 父는 喪

服중에서 가장 重한 斬衰三年이 된다 하였고 禮疑類輯에는 親親이라 함은 父母를 비롯하여 그 다음은 妻子·兄弟·伯叔의 순서라 하였고 喪服小記篇에는 셋으로 다섯을 만들며 다섯으로 아홉을 만드니 위를 내리고 아래를 올리고 옆은 좁히어 親이 끝나게 된다 하였다.

즉 己身으로 말미암아 위에 父가, 아래에 子가 있으니 하나로서 셋을 만든다고 하지 않음은 父子는 一體에서 不可分의 뜻을 일컫는 것으로 셋으로 다섯을 만든다함은 이 세가지를 모두 이룸이다. 父로 말미암아 祖와 親하고 子로 말미암아 孫과 親함이니 셋으로써 다섯을 만들고 또 다섯으로 일곱을 만든다 하지 않음은 대개 祖로 인하여 曾祖·高祖를 親함이고, 孫으로 인하여 曾孫·玄孫을 親함이니 그 恩德이 이미 疎略함이라 故로 다섯으로 아홉을 만든다. 父로 인하여 위를 내려 高祖에 이르고 子로 말미암아 아래를 높혀 玄孫에 이르니 이것이 곧 上殺下殺이다. 同父인즉 期年服이고, 同祖인즉 小功服이며 同高祖인즉 시마복이니 곧 옆으로 좁힘이고, 高祖以外는 無服이니 이것으로써 服이 다한다고 하였다.

以上에서 볼 때 五服의 輕重의 原則은 곧 親疎에 의거하여 규정되었다. 親族의 範圍는 儀禮 喪服篇에서 보듯이 自己를 中心으로 父(子포함), 母, 妻의 三면으로 分別되는데 父系親屬, 母系친속, 妻系親屬, 夫系親屬 등이 그것이다.

위와같이 親族의 範圍는 自己로부터 위로 四世, 아래로 四世에 미치고 我世를 포함하여 九世에 이르니 이는 五服本宗 從의 親屬關係이며 自己로부터 옆으로 昆弟, 從父昆弟, 從祖昆弟, 族昆弟, 또한 四世이니 이는 喪服四制에, 親한 程度가 멀어짐에 따라 服이 가벼워진다는 것으로, 父를 위하여 斬衰三年 祖를 위하여 齊衰周年 曾祖를 위하여는 단지 齊衰三月로 위로 갈수록 上殺되는 것을 말한다. 衆子를 위하여 齊衰期年 長子인즉 斬衰, 孫은 大功, 曾孫은 시마三月이라함은 下殺를 말하는 것이고 옆으로 줄여감이란 昆弟를 위하여 齊衰期年, 從父昆弟는 大功, 從祖昆弟는 小功 그리고 族昆弟는 시마三月을 뜻하는 것이다. 시마는 가장 가벼운 喪服이니 四代以外는 喪服制度는 적용되지 않는다. 儀禮 喪服傳에 族屬이 이미 단절된 者는 喪服을 입지않고 다만 親子가 存在時만이 相統屬이다 했다. 이것이 바로 親親의 뜻이다.

7) 禮記, 喪服小記

8) 禮記, 大傳

9) 禮記, 服問, 喪服의 原理부분은 服問篇의 내용으로, 以下 인용문헌은 각주에서 제외하고 본문에서 인용 문헌을 제시함

2) 尊尊

尊尊이란 身分의 高下가 喪服着用 輕重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喪服四制에, 父를 모심으로 君을 받들이니 공경함이 같고 貴한이를 貴히 여기고 높은이를 높힘이 義의 큰 것이다. 그러므로 君을 위하여 斬衰三年 義로서 制度를 삼기 위함이라 하였다.

또 禮疑類輯에는 尊이란, 君을 首로하면 그 다음은 공경대부가 된다 하였고 儀禮 喪服編에는 諸侯는 天子 및 君을 위하여, 公 士大夫는 그 君을 위하여, 庶人은 國君을 위하여, 그리고 大父는 從子를 위하여 各各 喪服의 規定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그리고 또한 儀禮 喪服傳에는 尊者를 위하여 有本服輕而加重者라 하여 높힘으로서 더함이라 하였다.

한편 孫孫이 大功으로 規定된 服制의 降殺順序에 의거하여, 孫은 祖父母를 위하여 所服應係大功才是로 반드시 大功服만을 입는다고 하였으나 孫이 祖父母를 위해선 齊衰期年이니 이것은 祖父母를 지극히 높힘이다. 마찬가지로 地位가 높은 者가 地位가 낮은 者에 대해서도 또한 높힘으로서 降服할 수 있다. 叔父母, 子, 昆弟, 昆弟의 子 등이 본래 모두 齊衰期年이나 大夫는 이들을 위하여(만약 이들이 士일 경우) 喪期를 大功九月로 降服한다. 이것은 높음이 같지 않기 때문이며 높음이 같으면 그 親服은 服할 수 있다.

尊尊은 君을 爲首로 공경대부에 미치는 政治的 身分關係의 表示이며 宗通의 높음을 존중하는 表示인 것이다.

3) 名分

直系血族은 아니나 名分關係로 인하여 喪服하는 것으로 世母喪, 叔母喪이 이것이다. 世母, 叔母가 期年服인 것은 親族의 名稱으로서 服하기 때문이다.

名이라 함은 伯叔母, 子婦, 弟婦, 兄嫂의 屬이다. 世母, 叔母는 본래 自己와 血統關係가 없으나 단지 世夫 叔父와의 婚姻關係로 인하여 母라는 호칭을 얻게 된다. 즉 世母, 叔母之屬이라 했으니, 非血緣의 關係로써 親屬으로 指名되는 傍系尊屬의 妻와 直系, 傍系 卑屬의 妻를 稱하는 것이다.

同姓間에는 宗을 좇아서 族屬을 승하고 異姓間에는 名을 主張으로 하여 際會함을 다스린다. 名이 나타나면 男女의 分別이 따른다. 그 夫가 父의 班列에 屬할 때는 아래로 모두 母의 班列에 屬한다. 弟의 아래에

夫가 弟의 班列에 屬할 때 妻는 婦의 班列에 屬한다.

그러므로 명은 사람을 다스리는데 있어 重大한 것이니 삼가하지 않을 수 없다.

4) 出入

出入이란 宗族歸屬에 의거하여 喪服의 輕重原則을 정하는 것으로 女在室은 入에 屬하고 出嫁者는 出에 屬한다. 出嫁者와 在室者와의 分別인 것이다. 未嫁女는 夫宗에 屬하여 반드시 父를 위하여 斬衰를 입으며 父母는 齊衰를 입는다. 出嫁後에는 宗이 바뀌므로 夫를 위하여 斬衰를 입고 本生父母를 위하여는 齊衰期年으로 降服하며 父母는 出嫁女를 위하여 大功九月服을 입으니 이것을 出이라 한다.

女子가 비록 出嫁하였으나 소박을 맞거나 無子일 경우, 다시 父宗으로 復歸하고 在室未嫁時의 服에 이르니 이것을 入이라 한다.

5) 長幼

禮疑類輯에 長은 成人이며 幼는 諸孺이라 하였다.

鄭玄은 長幼를 成人과 孺이라 하였으니 子女가 成人이면 父母가 斬衰三年服 혹은 齊衰三年服을 입고 長孺·中孺에는 降服하여 大功九月, 大功七月服을 입으며 下孺에는 小功五月服을 입는다고 하였다. 大夫가 冠을 쓰고, 婦人이 계하면 이는 모두 孺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려서 죽는 喪에는 長孺·中孺이 있는데 長孺은 十九世 以下에 中孺은 十二才 以上 十五世 以下에 죽은 者를 말한다. 下孺은 八才 以上 十二才 以下에 죽은 者를 말하며, 八才 以下로 죽은 喪에는 哭도 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儒家에 있어서 年齡에 依한 질서 制戒의 수립이 家族體系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長幼라 함은 成人과 未成人의 分別이며 名은 親族關係에 있어서 尊卑의 身分關係를 일컫는 것으로 傍系親屬의 尊者에 대한 服을 長이라 하고 그 卑者에 대한 服을 幼라 한다.

6) 從服

死者와 直接 親屬關係가 아니라 間接 親屬關係와 私恩 또는 義에 따라 喪服하는 것으로 從服에는 服間편에 모두 六項目이 있다.

(1) 屬從

屬從이란 間接의 親屬關係를 가르키며 親屬에 따라 그 黨을 위하여 服하는 것이다. 子가 母를 따라 母의 黨을 위하여 服하는 것으로 母가 父母를 위하여 齊衰

期年, 妻가 夫를 위하여 즉 夫黨을 위하여, 또 夫가 妻를 위하여 즉 妻黨을 위하여 服하는 경우이다. 外親 服에 대하여 大傳篇에 母出의 경우 繼母의 黨을 위하여 有服이 되며, 母歿의 경우 母黨을 위하여 有服이 되고 繼母의 黨을 위해서는 無服이 된다.

(2) 徒從

禮疑類輯에 徒는 空이라, 親屬이 아니라도 空從之服을 입는다고 하였다. 그 親屬은 아니나 義에 依하여, 즉 臣이 君黨을 위하여 妾이 女君黨을 위하여 子가 母의 君母黨을 위하여 喪服하는 것을 徒從이라 한다. 그러나 從之人이 죽으면 服은 그친다.

(3) 從有服而無服

儀禮喪服傳에 君이 不服하는 경우, 子 또한 감히 服할 수 없다. 注에 君의 不服은 妾과 庶婦를 이룸이니라. 禮疑類輯에 從有服而無服이란 公子의 妻가 本生親을 위하여 期年服을 입는데 대하여 公子는 君이므로 妻父母의 服을 입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從無服而有服

從無服而有服이란 公子의 妻가 公子의 外兄弟에 대한 것으로 夫의 兄弟에 대하여 妻는 대개 一等級을 降服하고 夫는 姑의 子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으나 妻는 無服이다.

公子는 君이므로 厭하는 바, 外兄弟를 위하여 服을 입지 않으나 公子의 妻는 服을 입는다. 즉 妻는 夫의 昆弟를 위하여는 服이 없으나 동서를 위하여 服을 입는다. 이 경우 無服에 따라 有服하는 것이다.

(5) 從重而輕

有服에 따라 無服하는 것은 公子가 그의 妻, 父母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妻는 親生父母를 위하여 重한 期年服을 하고 夫는 妻를 따라 服喪하나 輕한 三月服을 입는다.

母는 그의 兄弟의 子를 위하여 重한 大功服을 입고 子는 母를 따라 喪服하되 輕한 三月服을 하니 이것이 곧 重한 것에 따르되 輕하게 입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妻는 그 父母를 위하여 齊衰 期年服을 입으나 夫는 從服이 시마복이며 서로 차이가 一等級에 그치니, 이 경우를 從重而輕라 한다.

(6) 從輕而重

大傳에 의하면 公子의 妻가 皇姑를 위하여 服喪할 때는 가벼운 喪에 쫓아서 무거운 ...을 입는다고 하였다. 公子는 君을 위하여 누르지 않고 그 母를 위하여

가벼운 練冠을 쓰나 公子의 妻는 그를 위하여 期年服을 입는다. 이는 가벼운 喪에 쫓아서 무거운 喪에 服從하는 것이다. 公子는 君을 위하여 줄이지 않고 父가 生存時에는 母를 위해서 無服이나 亡時에는 늘리어 大功服이 된다. 公子의 妻는 姑를 위하여 存亡을 論하지 않고 모두 齊衰 期年服을 입는다.

그러므로 公子는 母를 위한 從服이 輕하나 公子의 妻는 從服이 重하니 이것을 바로 從輕而重이라 한다.

以上과 같이 服制組織의 原理가 六術로 되어있고 이중 從服을 六種으로 나눈 것은 世親, 親屬, 尊卑, 長幼, 男女의 關係 등에 응하여 그 輕重이 交錯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親疏, 輕重, 厚薄의 關係 등에 응하여 그 輕重이 交錯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親疎, 輕重, 厚薄의 關係를 補充하기 위하여 正服, 義服, 加服, 降服 등의 服制를 첨가하였다.

正服이라 함은 正規의 服으로 血緣關係를 中心으로 한 것이며, 義服은 本來 血緣關係는 아니나 義理를 위하여 服하는 것으로 妻爲夫 乃至 夫黨, 妾爲君, 夫爲妻 乃至 妻父母, 子爲生母以外的 諸母, 翁爲女婿 等の 경우이며, 加服은 父卒承君의 경우 嫡孫爲祖父母, 嫡曾孫爲曾祖父母, 嫡玄孫爲高祖父母의 服이 三年으로 加重되는 것이며, 降服은 出嫁女爲本生親, 出繼子爲生親 三年에서 期年으로 降감되며 子의 夫在爲母服이 三年에서 期年으로 壓屈이 되며 父卒嫁母 姑姊妹姪女嫡人 姨姒甥女適人과 같은 경우도 降감되어 있다. 長幼의 幼에 해당하는 未成人의 경우 各各 降감되며 八才 미만者는 無服之喪이다.

즉, 正服과 義服은 服의 所由生을 表示하고 加服과 降服은 服의 所有量을 表示하였을 뿐 大部分이 服術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다만 父卒承重으로 인한 嫡孫의 加服, 父在爲母의 壓屈로 인한 降服, 父卒嫁母의 降服 또는 無服(爲父後者無服) 등이 添加된 것이다.

通常의 경우 卑者가 尊者를 위하여, 年幼者가 年長者를 위하여 服喪하게 될 것이나 實際로는 卑者先生하고 尊者後生하는 경우도 있으며 年幼者 先亡하고 年長者 後亡하는 경우도 있어 自然히 卑幼者가 尊長者를 위한 服喪뿐 아니라 尊長者가 卑幼者를 위하여 服喪하게 되는 경우도 許多하므로 대체로 이를 稱하여 報服이라 한다.

이러한 喪服의 理論은 儒敎의 倫理 道德 思想의 基

礎의인 개념으로 父母親愛, 兄弟友義, 君臣忠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男女有別 等の 觀念理論이 差別的으로 適用된 것이다.

4. 五服의名稱

喪服은 死者 즉 喪者에 대한 服者의 外形의 表現媒體이므로 喪者에 대한 血族體系에 따라 그 等級이 分化되며 그 等級의 차이가 이른바 斬衰, 齊衰, 大功, 小功, 總麻의 五等級으로 되어있어 五服制度라 일컫는다. 이와같은 服喪의 等級의 구별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에서 연유하는가를 五服의 名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斬衰

儀禮喪服傳에 斬衰를 가리켜 斬衰裳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斬이라 함은 밑단을 풀어 놓은 것, 즉 꿰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懸子是 이르기를 三年의 喪에는 斬과 같고 期年의 喪에는 剋과 같으며 슬픔에 深淺이 있음을 이른다 하였으니 斬이란 것은 哀痛이 深하다는 의미이며 既夕에는 斬三升이고 그 注에, 衣와 裳이라 하였으니 이 衣는 衣服의 밑단을 不緝한 것 즉 꿰매지 않은 것으로 슬픔을 表現하고 장식하지 않음의 지극함을 의미한다.

喪服은 布로써 帛를 만들어 衣에 綴하니 衣의 名稱을 衰라 함은 衰란 布가 붙어있음에 인연한 것인즉 服用으로써 命名한 것이다. 苴麻라는 名稱은 經·杖·絞 등에서 얻은 것이다. 苴衰란 斬衣이니 그 名稱에서 因緣함을 알 수 있으며, 斬衰에는 苴經菹杖 및 苴絞帶가 있다. 苴衰란 粗惡한 色의 衰를 말하며 苴杖 및 苴絞는 竹으로 만들므로 그 色을 취하여 이름을 딴 것이다.

이와같이 斬衰는 그 制作方式과 麻布의 精粗 및 色에서 名稱이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齊衰

儀禮喪服傳에 齊衰는 疎衰裳 齊라고도 하는데 疏에 齊는 緝을 가르키는 것이며 衣服의 밑단을 호는 것이다 하였다.

또한 이 齊는 齊正, 齊等, 齊整 等の 의미로, 衣服의 製作에 있어 緣을 縫緝하여 正제함을 말한다. 論語, 孟子, 荀子에 나오는 齊衰의 齊의 뜻은 齊戒, 齊日, 齊忌 等에서와 같이 禁忌를 의미하는 것이니 喪服의 呪術의인 機能을 表示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齊衰란 齋衰이던 것이 音型的 相似로 齊字로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郭明昆은 齊衰, 小功 및 시마에서, 民俗과 禮論의 發展分化에 따라서 斬衰 및 大功이 分派된 것이라 하며, 荀子の 禮論篇에 斬衰와 大功의 기록이 없으니 後代에 加作된 것이라 하고 喪服의 原始的인 형태에서 있어 齊衰服이 가장 中心的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喪中の 喪裝이 平常時와 다름을 요하는 呪術宗教的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말하며 아울러 服者가 異常時에 처한 만큼 非生産的인 생활양식의 자연스러운 表現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大功

儀禮喪服篇에 大功布衰裳, 杜麻經이라 하였고 注에는 大功이란 만든 솜씨가 성글고 거칠다고 하였고 疏에서는 斬은 麤音으로 布와 功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哀痛의 至極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布體와 人功을 아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로써 大功이 輕한 服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儀禮 喪服篇 斬衰章에 大功이란 冠에 六升布를 使用하며 冢물에 삶지 않은 것이라 하였으니 龐大 즉 沽施함을 일컫는 것이다. 釋名 喪制에 布에 龐大의 功을 加하였으나 잘 다듬고 손질하지 않은 것이 大功이라 하였다. 따라서 大功이란 名稱은 布의 바탕의 功으로 인하여 命名된 것이며 大功 以上은 哀痛이 重하므로 감히 布體의 功을 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粗布에 약간 灰治의 功을 加하여 大功布라 이른 것이다.

4) 小功

儀禮 喪服篇에 小功布衰裳이라 하였고 大功章의 疏에는 小功이란 大功에 대한 것으로 다듬는 것이 곱고 세밀하다 라고 되어있다.

釋名에는 小功이란 정밀하고 섬세하게 손질하고 다듬는 것이니 가장 적게 장식한 것이라 하였다. 즉 小功 역시 布의 질감으로써 名稱을 붙인 것이고 大功과는 서로 대조되는 것이다.

5) 總麻

儀禮 喪服篇에 總麻三月者라 하였고 注에는 總麻는 布衰喪에 麻經帶라 하였으며 疏에는 總는 絲와 같은 것으로 衰裳을 만든다 하였다. 또한 注에는 總라는 것

10) 金斗憲, 五服制度의 연구, 진단학보 20권 2호, 1936, p. 48

은 실(絲)의 곱기가 비단과 같다고 하였으니 總麻역시 布의 질감으로써 그 名稱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5. 有服親의 範圍

喪服의 輕重이 親疎, 尊卑에 있으니 本生親의 경우 그 有服親의 限界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禮記大傳篇에 名이란 사람을 다스리는 火者이니 四世에 總를 입는 것이 服喪의 限界가 된다. 五世는 祖免親이며, 六世以外는 親盡이 되어 屬名이 없다 하였으니 直系로는 위로 高祖, 밑으로 玄孫에 미치게 되며 傍系로는 同高祖 八寸의 三從兄弟 姉妹에 이르게 되어 있다.

또한 親親의 範圍를 설명하고 있으니 父子有親의 原理에 따라 自己를 중심으로 위로 親父, 아래로 親子, 이리하여 三이 되고 以父親祖 以子親孫하여 五가 되며 以祖親曾祖 以孫親曾孫하여 七이 되며 以曾祖親高祖 以曾孫親玄孫하여 九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自己를 中心으로 上四대에 미치고 있기는 하나 直系로 高祖와 玄孫을 指稱할 뿐 上四代의 高祖同行列과 下四代의 玄孫으로서, 自己를 同高祖로 하지 않는 傍系同行列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上殺傍殺 下殺傍殺 그리고 單純傍殺가 적용되어 服의 輕重이 決定되며 이 範圍를 벗어나면 有服親이 될 수 없고, 有服親의 外緣은 自己를 중심으로 菱形을 이루며 가장 가까운 시마복으로 規制되어 있다. 有服親의 範圍는 直系로 上四代 下四대를 포함하여 여기에 自己를 넣어 이른바 九族 또는 九親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有服親의 限界를 표시한 것이며 九親의 同時共存은 있을수 없는 일이니 生理的으로 五代共存을 人間壽命의 限界로 보고 이에 恩愛의 厚薄이 생김을 인정하여 四親等 以內의 同高祖 八寸의 三從兄弟姉妹까지가 有服親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八寸以內라 할지라도 四親等以內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上殺傍殺 下殺傍殺 그리고 同行列에 대하여는 單純傍殺가 適用되어 同高祖 八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有服親의 限界가 菱形을 이루어 그 外緣이 가장 輕服인 시마복이 되는 것이며, 또한 同時共存의 可能性에 基調를 둔 五代四親等の 原理가 祭禮에 까지도 適用되어 四世而親盡이 된 것이다.

儀禮喪服傳에 이 有服親의 範圍는 父系의 親族을 規制한 것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同性親이어야 할 것이나

同性親의 妻인 異性親도 대체로 그 夫의 地位에 準하기 때문에 夫는 父母를 위하여 再期인대도 不拘하고 妻는 舅姑를 위하여 期年으로 降服한다.

또한 有服親의 範圍는 現行民法上 親族의 範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法律은 大陸法을 日本을 통하여 繼受한 반면 親族相續法만은 우리의 慣習을 그 基礎로 하였기 때문이다. 즉 依用民法當時 日帝當局은 우리의 有服親을 法律上의 親族範圍로 인정하였고 現行民法의 親族範圍는 대체로 舊民法上의 親族範圍를 답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親族關係로 인한 法律上 效力은 民法 또는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民法上 親族範圍가 이에 미치는 것으로¹¹⁾ 財産相續, 入養, 扶養, 婚姻關係 등 民法上 法律關係는 물론 刑法上으로도 親族關係로 인하여 刑罰이 加減되는 경우가 있으며¹²⁾ 民事訴訟法과 刑事訴訟法上으로도 法官의 除斥과 忌避 그리고 回避의 根據가 되는 등¹³⁾ 親族의 範圍는 法律上으로도 매우 重要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개 親族範圍의 限界는 當該社會의 經濟構造에 따르는 共同生活 關係의 여부와 그 社會制度에 의한 思想的인 基礎에 따라 決定된다고 볼 때 現行民法體制中 흔히 家族法이라고 불리는 親族·相續法에는 儒家의 思想이 뿌리깊이 스며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전 親族·相續法은, 父系親族關係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父系血族과 母系血族間에 그리고 男女間에 심한 差別을 두어 人間의 尊嚴과 男女平等의 原則에 背馳되는 매우 不當한 立法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 후 1989년 친족·상속법 개정으로 남녀평등 문제등 많은 부분의 개선이 있었으나 인척의 범위가 실생활과는 유리되게 너무 확대된 것과 과거 法定母子 관계였던 嫡母庶子 관계와 繼母子 관계를 인척관계로 개정한 것은 입법론상의 不備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繼母子 관계를 인척관계로 고친 것은 우리의 생활감정과도 부적합하여 가족법학계에서도 강한 이의를 표하고 있는바, 실정법과는 관계없이 嫡母庶子間·繼母子間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상복착용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1) 金疇壽, 親族相續法 法文社, 1990, pp. 327-328

12) 李在祥, 刑法總論, 博英社, 1990, p. 73

13) 白亨球, 刑事訴訟法講義, 博英社, 1993, p. 140

III. 結 論

儒敎喪禮에 있어서 喪服에 대한 概念은 儒敎의 宗法 社會中 父系를 中心으로 한 繼世思想에서 起因하고, 稱情而立文 立中制節의 사상을 근본으로 한다. 또한 喪服은 儀禮, 禮記의 服術에 根據하여 그 原理가 組織되었는 바 親親이란 血緣의 親疎에 의한 것으로 服喪의 輕重의 基本이 되고, 둘째 尊尊은 身分의 高下에 따라서, 셋째 名分이란 直系親屬이 아니고 다만 名分상의 關係로, 넷째 出入은 宗族歸屬에 의한 出嫁한 女子의 喪服이며, 다섯째 長幼라 함은 年齡에 따라 喪服의 基準이 설정된 것이고, 여섯째 從服은 間接관계인 的 服喪을 말한다.

이와같이 6個服術에 의거하여 喪服은 五服制를 이루는 바, 즉 袒衰, 緇衰, 大功, 小功, 緇麻의 5단계의 喪服制度가 그것이며 五服의 제작방법, 麻布의 精粗, 色, 착용범위 등등을 차별하여 大家族制度의 形成 및 그 定着維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喪服을 입을 수 있는 五服親은 有服親이라고 하여 家族이란 血緣共同體의 鞏固한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五服親은 長子相續이라는 財産의 相續制度和 祭祀라는 祖上崇拜 行爲에 그 구체적인 範圍와 親族의 範圍를 확실하게 定할 수 있게 하였으며 五服의 等級

에 따라 家族間의 親疎의 區別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家族社會 次元에서의 喪服의 機能은 점차 發展되어 國家的 次元에서 祖上崇拜와 天道를 崇拜한다는 旗幟 아래 封建의 政治의 수단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었으며 次別等級의인 五服制度는 그대로 확대되어 國家的 制度적 차원으로 발전하였고 결국 爲政의 體制維持적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鄭玄 外, 禮記注疏, 商務印書館
 楊涼, 荀子約注, 世界書局
 鄭玄 外, 儀禮注疏, 華世出版社
 金長生, 家禮輯覽, 奎章閣藏本
 朴聖源, 禮儀類輯, 奎章閣藏本
 許傳, 士儀, 奎章閣藏本
 兪彥集, 五服名義, 奎章閣藏本
 郭明崑, 儀禮服飾考
 楊樹達, 儀禮服飾考辯
 李能和, 朝鮮喪祭禮俗史,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 5, 1930
 金嘯壽, 親族相續法, 法文社, 1990
 李在祥, 刑法總論, 博英社, 1990
 白亨球, 刑事訴訟法講義, 博英社, 1993
 趙又玄, 拙考, 淑大大學院 學位論文, 1990